EU - EU 행정협력지침 개정안(DAC7) 유럽의회 승인

■ 2021년 3월 10일 유럽의회는 디지털 거래 과세에 관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협력지침 개정안(DAC7)을 승인하였으며,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됨[1)]

○ 온라인 플랫폼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을 회원국에 보고해야 하고, 세무 당국은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할 의무가 있음

■ **비EU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도 EU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단일 회원국에 플랫폼을 등록하고 플랫폼을 통하여 얻은 수입 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함**

○ 플랫폼 등록 시 비EU 온라인 플랫폼은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있는 회원국에 등록해야 함

○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은 EU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■ 정보 요청 시 세무당국은 신속히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

○ 정보 요청을 받은 세무당국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함

○ 이용 가능하거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회원국 세무당국에 자동으로 전달해야 함

○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2년 말까지 정보 교환의 효과성을 포함하여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국가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
○ 2022년 1월 1일부터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세무당국에 정보 공개를 허

1) 유럽 의회, "Better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uthorities on taxation of digital trading", https://www.europarl.europa.eu/news/en/press-room/20210304IPR99217/better-cooperation-between-national-authorities-on-taxation-of-digital-trading, 검색일자: 2021. 3. 22.; 유럽 의회,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f 10 March 2021 on the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amending Directive 2011/16/EU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axation (COM(2020)0314 - C9-0213/2020 - 2020/0148(CNS)), https://www.europarl.europa.eu/doceo/document/TA-9-2021-0072_EN.html, 검색일자: 2021. 3. 22.

용하지 않는 제3국과 새로운 이전가격 사전합의(양자 또는 다자간)를 할 수 없음

<자료 수집 및 정리: 변정윤 연구원>